

# 광역경제권 지역발전정책의 재원조달방안 검토<sup>1)</sup>

서 정 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 I. 들어가기

새로운 정부에서는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여 지역주도의 지역발전과 광역 지역의 지역경쟁력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 광역경제권 지역발전 구상은 대통령직위수위원회에서 발표된 후 다양한 대안들이 제기되었으며 정부에서는 2008년 7월 이후 몇차례에 걸쳐 광역경제권 지역발전정책의 구상과 전략을 발표하였다.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골격은 163개 기초생활권, 5+2개의 광역경제권, 4개의 초광역개발권으로 나누어 추진하는 것이다.

광역경제권은 행정구역 또는 광역권의 개념이 아니라 경제·사회·문화·정치 등 다양한 관점에서 공통성을 가지면서 하나의 자립적인 경제단위로서 기능할 수 있는 지역을 일컫는다. 광역경제권 추진의 목적은 외국의 예에서 볼 때 공공행정의 강화를 위한 새로운 지역조직과 지역의 경쟁력 강화에 있다.

1) 본 연구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광역경제권 도입에 따른 재원조달과 운영방안」, 2008(연구보고서)의 연구중에서 광역경제권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부분의 일부를 발취하여 재정리한 것이다.

우리나라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발전정책은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의 3차원적 접근에서 각각의 기능과 사업, 추진기구, 자원조달 및 운영 등의 추진방법을 달리하고자 하고 있다.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발전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자원조달과 그 운영방식에 대한 체계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광역경제권 지역발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자원조달 및 운영방법들은 계속하여 탐색중에 있다. 자원조달과 관련하여 중앙재원의 지원은 기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의 확대·개편 활용, 기타 관련 보조금 활용, 신규재원 조달등으로, 지방재원은 지방비의 활용으로, 그리고 공기업 및 민간자본 활용 등을 고려하고 있다. 중앙재원의 지방으로의 지원방식은 지방의 재정자율성 제고 차원에서 포괄보조금형식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정부에서 고려중인 자원조달 방향에 맞추어 가능한 자원조달 원(源)으로 무엇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광역경제권의 용어는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을 모두 포괄하는 범위이다. 우리나라의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발전정책에서 기초생활권은 광역경제권에 포함되어 있으며 초광역개발권은 2~3개의 광역경제권에 걸쳐 있기 때문이다.

## II. 광역경제권의 의의와 우리나라의 추진전략

### 1. 의의

광역경제권이란 영역적인 측면에서 기존 행정구역의 경계를 초월하는 것이며, 기능적인 측면에서 두 개 이상의 정부간 공동사업, 즉 광역적 사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광역경제권이 나타나게 된 배경에는 지역중심 그리고 지역의 경쟁력 확보가 내제되어 있다.

광역경제권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개념이 아니라 경제·사회·문화·정치 등 다양한 관점에서 공통성을 가지면서 하나의 자립적인 경제단위로서 기능할 수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광역경제권은 지역경제권 중에서도 통근권이나 생활권 같은 기초적 경제활동보다는 산업의 다양성, 수출과 외자유치 등과 같은 경제활동의 광역적 상호 보완성이 강조되는 경제권을 의미한다.

광역경제권 개념의 이론적 배경에는 지역국가론, 도시지역론, 슈퍼지역론, 네트워크경제론 등이 자리 잡고 있다. 광역경제권의 이론적 배경이 된 이러한 이론들은 공통적으로 향후 지방이 국가의 역할을 대신할 것이라는 점이다. 일례로 지역국가론에서는 국경 없는 글로벌 경제시대에서 지역국가가 가장 적합한 공간단위라고 주장하고, 이 지역국가는 정치적 국경선이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 적절한 사업단위를 갖출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대체의 이론들이 단

일의 경제권을 중심으로 권역화 하는 데 초점이 있는 반면 네트워크경제론에서는 개별지역이 갖고 있는 내부자원과 다른 지역의 자원을 연계하여 활용하게 될 경우 더욱 큰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여 복수주체간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

〈표 1〉 광역경제권의 이론적 배경과 특징

구분	지역국가 (regional states)	도시지역 (city region)	슈퍼지역 (super region)	네트워크경제론 (economics of network)
규모	- 인구 300만~2000만	- 인구 800만~1200만	- 국경 초월	- 권역간 연계
특징	- 소비재 상품의 브랜드 개발에 필요한 정도의 시장 - 세계경제에서 하나의 경제권으로 인정받을 정도의 인프라 - 지방이 곧 국가	- 세계도시(world city), 글로벌시티(global city)에 뿌리를 둠	- 국경을 초월한 경제의 광역화와 지역통합	- 규모의 경제와는 차별화된 경제성 - 복수주체간의 연계

자료 : 이원섭, “광역경제권 구축방향과 과제”, 산업연구원, 지역경제, 2008.3; 한국은행, 주요국의 광역경제권 구축사례와 시사점, 2008을 재정리.

## 2. 우리나라의 추진전략

### 1) 지역발전정책으로 광역경제권 추진

오늘날 세계는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로 세계 각국은 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광역화와 분권화를 동시 추진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국토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자립형 지방화 촉진을 위한 시책을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하였다. 하지만 산술적·결과적 균형에 집착한 나머지, 실질적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으로서의 연계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중앙주도의 나눠주기식 분산투자로 막대한 재정투자에도 불구하고, 투자 효율성이 저조하고 지역의 특화발전을 저해하였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와 우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새로운 지역개발 정책으로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발전전략을 추진하게 되었다.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의 기본방향은 첫째, 세계화에 대응하는 광역권경제권 중심의 열린 국토공간 구축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창조이다. 둘째,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바탕으로 특성화된 지역발전의 추구로 차별화된 발전전략으로 지역의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셋째, 지방분권·자율을 통한 지역주도적 발전체제로 전환하여 실질적 지방분권을 이룩하는 것이다. 넷째, 지역간 협력과 상생을 통한 동반발전의 추구이다.

광역경제권 지역발전정책의 추진전략의 첫 번째 과제가 전국토의 성장잠재력 극대화이다. 이를 위하여 모든 지역의 성장잠재력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의 단위로 나누어 차별화된 개발전략으로 발전하도록 하고 있다.

## 2) 권역의 개념과 추진방향

「기초생활권」은 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권역으로서, 대도시를 제외한 163개 시·군을 기초생활권으로 설정하고 있다. 기초생활권은 교육·의료·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 낙후 농산어촌의 레저·휴양 거점화, 지역연고자원의 2·3차 산업 융합 등 소득·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추진주체는 163개 시·군 해당지역이 중심이 되어 자율적으로 발전계획을 수립·시행토록하고 있다. 자원조달 및 운영은 현행 시·군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기존의 지방재정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기초생활권의 육성을 위해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며, 지원방식은 지역의 우선순위에 따라 집중지원 될 수 있도록 사업을 통폐합하고 포괄보조금화 하여 배분하고자 하고 있다.

「광역경제권」은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한 지역 경쟁력을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제·산업권과 역사·문화적인 동질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권역이다. 광역경제권은 인구 500만 내외의 5대 광역경제권과 인구 100만 전후의 독립적 경제권인 2개 특별광역경제권으로 구성하였다. 현재 5+2의 권역으로 수도권(서울, 경기), 충청권(대전, 충북, 충남), 호남권(광주, 전북, 전남), 대경권(대구, 경북),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과 강원권(강원), 제주권(제주특별자치도)으로 구성되어 있다. 광역경제권의 추진은 중앙정부 주도로 초기단계 부터 인위적으로 권역을 설정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우선 5+2를 가이드라인으로 하여 지역간 자율적인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예산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고 있다. 광역경제권사업의 재정지원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광특회계) 등을 통해 조달한 방침이다. 광역경제권 사업에는 지방비, 광특회계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되, 국가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타 회계, 기금 등을 통해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기존 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확대·개편하여 2010년부터 시행할 예정에 있다.<sup>2)</sup>

「초광역개발권」은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광역경제권 간 또는 다른 광역경제권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산업·문화·관광 및 교통 등의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권역으로서, 남해안선벨트, 서해안신산업벨트,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 남북교류·접경벨트의 4개 권역을 설정하고 있다.<sup>3)</sup> 초광역개발권의 추진주체와 재정지원은 국가주도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2)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일부가 개정·공포(2009.4.22)되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역발전위원회 등으로 일부 변경되었다.

3) 향후 내륙축도 지역발전위원회(균형위)의 심의를 거쳐 권역 및 개발계획을 확정할 예정에 있다.

국가주도로 추진하되,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과의 긴밀한 협의체계 구축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소요재원은 중앙예산, 지방비 등 공공재원과 함께 민자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중앙부처는 교통망, 단지 조성 등 초광역권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며, 관광, 레저 등 수익성 사업은 국내외 민자를 적극 유치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 Ⅲ. 광역경제권 지역발전을 위한 자원조달방안 검토

#### 1. 중앙자원 조달방안

광역경제권 지역발전 혹은 지역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중앙재원은 현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부담금이 있으며 이외 신규재원을 발굴 할 수 있다.

일반회계의 경우 국가의 직접투자과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 형태로 지원되어 투자된다. 국고보조금은 각 부처의 지역개발 관련 재원으로 지방으로 이전되어 지방비와 함께 투자된다. 일반회계의 경우 광역경제권 지역발전정책에 소요되는 재원의 비중을 증가시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중앙정부 예산 220조원(2008년 일반회계+특별회계 총계 기준) 중 80%가 일반회계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시대 요구에 따른 재정운영과정에서 분야별 자원배분의 중점이 「국방 → 경제 → 복지」의 순으로 변화하여 왔다. 광역경제권 지역발전 정책이 지역경쟁력 강화와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한 선도산업 육성, SOC 투자,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기초생활권 육성 등 지역 경제·개발이 중시되고 있다.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한 분야별 자원배분이 광역경제권 지역발전 정책에 부응한 자원배분으로 일반회계의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다.

특별회계는 2008년 현재 기준으로 18개를 운영하고 있다(〈표 2〉 참조). 이중 새로운 지역발전정책과 관련되어 지역개발에 투자될 수 있는 회계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78,146억원), 교통시설특별회계(132,286억원), 환경개선특별회계(31,159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76,382억원),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회계(3,266억원),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1,113억원) 등 6개의 특별회계이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는 기초생활권의 농림어촌의 산업, 교통시설특별회계는 광역경제권의 도로, 항만, 도시철도, 철도, 환경개선특별회계는 대기, 4대강 수질, 상하수도, 지역 환경문제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2009.4.22 이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는 지역개발 관련 여러 부처, 회계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통합한 것으로 실제로 지방재원의 회계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회계와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건설을 위한 회계이다. 이중 지방재원확충과 가장 관련이 있는 회계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전액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원되는 보조금회계이다. 따라서 광역경제권 지역발전 정책을 수행하는데 지방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이 회계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 회계의 확대는

광역경제권 지역개발전략, 즉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초광역개발권 포함)의 개발방향 및 내용에 맞는 다른 회계의 사업들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사업과 재원의 일부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과 기업도시건설도 광역경제권의 성장거점 기능으로 육성한다는 차원에 보면 관련 사업 및 재원이지만 이는 별도의 회계로 현재와 같이 운영하여 국가가 직접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들도 광역경제권 추진기구가 재정집행을 가지게 될 경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통합하여 사업이 상호 연계되도록 할 필요도 있다.

〈표 2〉 중앙정부 예산(2008, 일반+특별회계 총액기준)

회계별		규모(10억원)
일반회계		174,985
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7,814
	교통시설특별회계	13,238
	등기특별회계	256
	교도작업특별회계	44
	에너지및자원산업특별회계	3,610
	환경개선특별회계	3,115
	우체국보험특별회계	579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1)	7,638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262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회계	326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327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11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91
	양곡관리특별회계	1,322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892
	조달특별회계	227
	우편사업특별회계	3,185
우체국예금특별회계	1,909	

주 : 1) 2009.4.22부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임  
 자료 : 기획재정부, 2008 나라살림, 2008

중앙기금은 2008년 현재 60종으로 2008년도 운영계획은 370조원에 이른다. 기금은 기금마다 특수 사용목적이 있다. 기금에 따라서는 전부 혹은 일부가 지역 SOC, 지역산업, 고용·교육, 문화·복지 등 지역발전과 관련되어 직접 지출되거나 기금재원을 빌려 쓰는 등 간접적으로 활용

되는 부분이 많다. 또한 기금은 특별회계 재원으로 전출되거나 직접 지출된다. 이 때문에 중앙 기금은 현재 정부 재정에 포함되어 예산의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 광역경제권 지역개발 재원으로 기금의 활용이 필요하다. 현재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재원으로 대부되고 있으며, 복권기금의 일부는 지역개발사업의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고 있다. 고용협기금은 고용에, 과학기술진흥기금은 과학기반조성 및 인력양성에, 4대강수계관리기금은 수계관리 및 주변지역개발에,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은 중소기업 운영 재원으로서의 용자에, 각종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에 각각 활용되고 있다. 향후 기금의 운영에서 광역경제권 추진사업으로서의 비중 확대 및 여유자금의 활용(예를 들면, 지방채 매입), 민간기업의 광역경제권 사업진출과 관련한 신용보증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광역경제권 지역발전 추진을 위한 새로운 기금의 설치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새로운 기금으로 지방발전기금의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표 3〉 참조).

〈표 3〉 중앙정부 기금(2008)

구 분	기 금
사회보험성기금	고용보험기금,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계정성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외국환평형기금, 복권기금
금융성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수출보험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사업성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주택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국제교류기금, 군인복지기금, 근로자복지진흥기금, 금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남북협력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작물재해보험기금, 농지관리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방송발전기금, 보훈기금, 사학진흥기금, 수산발전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신문발전기금,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기금, 여성발전기금,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영화발전기금,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응급의료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축산발전기금,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주 : 밑줄친 기금은 광역경제권 지역발전에 직접 활용 될 수 있는 기금임  
 자료 : 기획재정부, 2008년도 기금 현황, 2008

부담금은 2007년도 12월말 현재 101종에 징수된 금액은 14조원 3,650억원에 이른다. 부담금은 기금, 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 공단 등 기타기관에 귀속된다. 2007년도 전체 부담금 징수액 중 76.2%인 10조9,558억원이 중앙정부의 기금(7조 6,032억원)과 특별회계(3조 3,526억원)의 수입으로 귀속되었다. 또한 전체 부담금의 12.4%인 1조 7,772억원이 광역자치단체(8,565억원)와 기초자치단체(9,207억원)의 수입으로, 나머지 11.4%인 1조 6,321억원이 공단 등 기타기관의 수입으로 귀속되었다. 현재 부담금은 지역개발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부담금은 중앙의 환경개선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전출되어 지역개발 투자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금으로 전출되는 기금도 부분적·간접적으로 지역개발재원으로 활용되는 부분이 많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는 기금은 대부분 지역개발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부담금이 광역경제권 지역발전 정책에 더욱 활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귀속 부분이 많아져야 하며 중앙정부로 귀속되는 재원도 지역개발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표 4> 참조).

<표 4> 귀속주체별 부담금 귀속내역(2007)

(단위:억원,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단 등 기타	계
	기금	특별회계	광역	기초		
귀속금액	76,032	33,526	8,565	9,207	16,321	143,650
비율	52.9	23.3	6.0	6.4	11.4	100

자료 : 기획재정부, 2007년도 부담금 운영보고서, 2007

이상을 종합하면 광역경제권 지역발전을 위한 중앙재원 조달방안은 일반회계의 지역발전 관련 재원배분의 비중 확대, 지방이전재원 확대, 특별회계의 조정, 기금 및 부담금의 지역개발 관련분야로의 재원배분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 2. 지방재원 조달방안

### 1) 현행 체제하에서의 재원확보

광역경제권 지역발전정책의 추진전략을 보면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그대로 유지한 채 지방간 자율적인 협력체제로 광역경제권의 기반을 형성하고 단계적으로 추진체계, 즉 추진기구 및 자원조달체계를 변화시키다는 구상이다.

현재의 시·도, 시·군·구의 행정단위를 유지할 경우 지방재정제도의 개선으로 지방재원의 조달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원 확충, 국가재정지원방식의 개선, 민간자본의 활용 등이 중심이 될 것이다. 지방재원 확충은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및 국가지원재원의 확대 내지는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이 주안점일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에 따른 규제완화 등으로 발생하는 수도권 세수입 및 부담금 수입의 지방재원화로 지방재원을 확충할 수 있다(〈표 5〉 참조).

〈표 5〉 지방재원 조달방안

지방자치 단 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재원(지방세, 세외수입)</li> <li>- 의존수입(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 중앙재원에서 이전</li> <li>- 지방채 : 정부의 특별회계 및 기금 활용, 민간재원 활용</li> <li>- 지방기금 및 지방공기업 : 지역개발 재원으로 활용 및 직접 투자</li> </ul>
민간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채로 활용, BTL 사업 등 민간재원 활용, 민간의 직접 투자</li> </ul>
신규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도입</li> <li>- 규제완화에 따른 각종 부담금 증액과 지방재원화</li> </ul>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는 구역 내의 지역발전계획·시행을 각각 독자적으로 하기 때문에 재정 운영도 독자적으로 이루어진다. 광역경제권 지역발전은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의 자율적 추진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를 조장하고 적극 권장하기 위해서는 지역간 협력사업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부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중앙정부는 협력사업을 지원하고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재원의 마련이 필요하다.

## 2) 광역경제권을 전제한 자원조달 방안

### ① 외국의 사례

영국의 지역 RDA는 중앙의 BERR(사업·기업·규제개혁부)로부터 배정받은 재원으로 직접, 지방정부, 민간과 함께 사업을 시행한다. 지역 RDA는 지방정부와 지방비 매칭으로 보조사업을 시행하며 지원 비율은 평균 60% 정도이다. 지역 RDA는 과세권 혹은 기채권 등은 없다.

프랑스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광역경제권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지방정부간 협약방식에 의한 협력기구가 구성되어 운영된다. 대표적인 광역경제권은 리옹 광역경제권으로 55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프랑스의 광역행정단위인 레지옹은 22개로 레지옹에는 사업소세의 과

세권이 있다. 과거 중앙행정기구인 DATAR(국토및지역계획단)는 국토통합 및 균형개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약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지방에 교부금을 지원하였다. DATAR에서는 22개 레지옹을 7개(1996년), 6개(2000년) 대광역권으로 구분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DATAR는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국토개발을 위하여 지역기구(MIAT)와 통합하여 DIACT로 확대·개편하였으며 DATAR의 업무를 승계하였다. 프랑스의 경우 행정단위인 레지옹은 사업소세와 같은 과세권이 부여되었으며, DATAR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약을 수행하였고, 자연적인 대도시 광역경제권은 자치단체간 협약이 이루어졌다(한국은행, 2007).

일본은 8대 광역지방계획과 도도부현의 지방행정체계를 광역행정체제로 개편하는 「도주제」 도입 논의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8대 광역지방계획은 광역지방협의회가 구성되며, 이는 중앙정부의 지방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역공동체 등으로 구성된다. 광역권별로 계획이 수립되며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광역권별 협의체가 구성되기 때문에 지역간에는 협력을 기본으로 한다. 한편 도도부현 대신에 9개에서 13개의 안까지 제시되는 「도주제」도 동시에 논의되고 있는데, 도주는 세원을 갖고 특정분야의 입법권과 행정권을 행사하면서 자립적 재정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다. 도주는 국가가 부여한 세목과 세율을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도주채(道州債)도 발행한다.

독일은 자생적으로 형성된 광역경제권 가운데 11개 지역을 대도시권역(Metropolitan Regions)으로 지정하였다.<sup>4)</sup> 대도시권은 권역 내 모든 지방자치조직을 중심으로 기업인, 공공기관 등을 포괄하는 권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권역협의체는 기존 행정조직을 대신하지 않으며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운영되며 결정사항은 구속력을 갖는다. 예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출연금, 연방정부지원금 등으로 조달하며, 일부 권역은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자회사(교통, 공원관련 기관)를 설립·운영한다. 프랑크푸르트/라인마인권역(헤센주, 라인란트팔츠주, 바이에른주에 걸쳐 7개 도시 및 17개 소지역[Kreis:우리나라 군과 같은 행정단위]으로 구성)은 권역계획협회, 광역권위원회, 경제촉진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산하에 3개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슈트트가르트권역(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주도인 슈트트가르트시와 5개 소지역으로 구성)은 업무수행기관으로 권역연합을 설치하였으며 예산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연방정부로부터의 지원금 등으로 조달되며 예산의 80% 이상을 교통관련 사업에 지출한다. 독일의 행정구역 광역화 방안은 주를 통합하는 것으로 재정세제도가 기존의 주와 큰 차이가 없다.

4) 독일에서 대도시권역의 개념은 1995년에 처음 제시되었으며 연방정부는 1997년에 7개 지역 2005년에 4개 지역을 지정하였다

〈표 6〉 각국의 광역경제권 자원조달 방안 비교

	중앙정부(기구)	지방정부(기구)
영국	<u>BERR(중앙)</u> - 국토 및 지역개발 시행 - 단일예산(6개 부처 지원) · 유럽지역개발기금(ERDF), 농어촌개발 프로그램(RDPE) 보조금 예산 운영 · 정부차입 가능 · 배분공식으로 배분(포괄보조금)	<u>RDA(지역)</u> - RDA별 자율적 세출운영 - 지방정부와 매칭사업 추진(60% 지원) · 민간 등과 사업 추진
프랑스	<u>DATAR(중앙) → DIACT확대(2005)</u> - 국토·지역개발, 국가·지방 협약업무 · 지역에 교부금 지원 *MIAT와 통합 DIACT로 확대·개편 - 대광역권 구상 · 22개 레지옹을 6개 대광역권 안 제시 * 당초 7개 대광역권에서 6개로 수정 - DIACT는 국토개발, 국가와 지방 협약 업무 · 6개 대광역권 형성 공감대 형성 중	<u>대도시 광역경제권</u> - 대도시 중심 자연스럽게(자율적) 형성(리옹 등) - 지방정부간 협약방식의 협력기구 구성(의회와 집행기관 등) * 행정단위 아님  <u>레지옹(Region) : 22개 행정단위</u> - 중앙 보조금 및 사업소세 과세  <u>MIAT(지방) : DATAR 대응 지역기구</u> - 부처간, 지역간 대표단 - 협력 및 조정업무  - MIAT는 DIACT의 지방기구 전환
독일	<u>행정구역 광역화</u> - 16개 주를 광역경제권 중심의 12개로 통합 방안 제시(1950년부터) - 1990년 이후 6~9개주 통합방안 제시 됨	<u>대도시권역(Metropolitan Regions)</u> - 중앙정부가 11개 지정 - 지방정부 중심으로 기업, 공공기관의 협의체 구성 · 행정조직아니나 집행기능 수행 - 지방정부 출연금, 연방정부보조금 지원, 자회사 설립 운영  <u>9개주 방안 최근 제시됨(2003년)</u> - 행정구역 통합으로 주의 제도 승계
일본	<u>광역지방계획</u> - 중앙정부는 「전국계획」과 「광역지방계획」 수립 · 광역지방계획은 지역의견 반영 수립  <u>「도주제」</u> - 도도부현을 대신할 도 또는 주 설치 *도도부현 폐지	<u>8대 지방광역계획구역</u> - 광역별로 광역지방계획협의회 구성 - 중앙정부의 보조금 - 자치단체간 협력을 기본으로 함  <u>9~13개 도주(안) 제시</u> - 2018년경 도주제로 이행(자민당) - 홋카이도 2007년부터 시범실시 - 자주적 입법권, 행정권 수행 - 국가에서 부여한 세목, 세율, 기채 결정

## ② 우리나라 광역경제권 추진기구

광역경제권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중앙기구로는 대통령 소속하에 지역발전위원회(대통령 자문기구)를 설치하고, 관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지역발전기획단을 설치토록하고 있다. 또한 지역발전기획단 업무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발전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역발전지원단(지식경제부)과 지역발전지원팀(그 외 중앙행정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지역기구로는 광역경제권별로 해당 권역내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를 설치토록하고 있으며, 이의 역할은 광역계획수립·시행, 협력사업 발굴 및 재원의 분담, 다른 광역경제권과의 협력사업 등의 의사결정이며 집행기능은 하지 않는다. 각 시·도에는 시·도발전협의회, 시·군·구에는 시·군·구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수순 민간으로 구성되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조정 기능을 한다.

광역경제권 추진과 관련하여 중앙기구는 광역경제권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지역기구인 광역경제권별 광역발전위원회는 광역계획 수립·시행, 연계·협력사업 발굴 및 자원분담 등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며 집행은 각 시·도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각 시·도 및 시·군·구별로 해당 자치단체의 주요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한 민간기구인 지역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광역경제권의 추진기구인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는 의사결정기구이며 집행기구는 아니다.

우리나라의 광역경제권 추진은 기존의 행정구역을 기본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기초생활권의 경우 시·군 자치단체와 권역이 동일하고, 초광역개발권은 국가가 직접 수행하기 때문에 현행 제도하에서도 지방자원 조달체계에 문제가 없으며 다만 자원 확대가 과제이다. 하지만 기초생활권의 경우 기초생활권간 혹은 광역경제권과의 협력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추진체계가 미흡하다. 또한 광역경제권은 시·도 단위의 행정구역을 단위로 묶여 있기 때문에 기존 재정제도를 그대로 수용하면 된다. 각종 연계·협력사업은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에서 자원분담 등을 결정하면 된다.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볼 때, 광역경제권 기구인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의 재정관련 기능이 미흡하다.

## ③ 광역경제권 추진기구의 유형별 자원조달 방안

외국과 우리나라의 광역경제권 추진기구를 살펴보면 3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각 광역경제권별 추진기구는 ① 자율적 협력방식형, ② 중앙기구의 집행기능형, ③ 행정단위형의 3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한편, 광역경제권의 사업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은 중앙정부의 보조금 외 자체적으로 분담금, 조세권, 기채권, 특수법인 설립, 민관공동투자 등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다양한 재원조달 방식은 추진기구의 기능과 권한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추진기구의 법적 지위에 따른 재원조달 방법은 다음과 같다(〈표 7〉 참조).

〈표 7〉 광역경제권 추진기구 형태와 재원조달방법

구분	자율적 협력방식형		중앙의 집행기능형	행정단위형
	의사결정	의사결정+집행기능		
사례	광역경제권(한) 광역지방계획(일)	- 대도시광역경제권(프) - 대도시권역(독)	- 지역 RDA(영)	- 대광역권(프) - 행정구역광역화(독) - 도주제(일)
재원 조달 방법	- 자치단체간 재원분담 결정 - 집행은 광역경제권내 자치단체가 수행	- 중앙정부 보조금 - 자치단체간 부담금 - 사업시행 법인설립 - 민관공동투자	- 중앙기구로부터 예산 배분 - 권역 내 지방자치단 체와 매칭사업 - 민관공동투자	- 국가가 부여한 조세권, 기채권 등 - 지방정부로 자율적 재 정운영

주 : (한)은 한국, (일)은 일본, (프)는 프랑스, (독)은 독일, (영)은 영국임.

현재 우리나라 광역경제권 추진과 관련한 추진기구 중 광역경제권별로 설치되는 광역경제권 발전위원회는 광역경제권 사업 및 재원분담 등에 관한 의사결정기관으로 집행기능은 부여되고 있지 않다. 집행기능이 없을 경우 과거 행정위원회 및 조합과 같은 실천력이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광역경제권 도입 초기는 자치단체간 자율적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집행기능을 부여하는 법적지위를 부여할 계획이다. 광역경제권별 추진기구의 법적 지위가 의사결정만을 할 경우 자치단체간 연계·협력사업의 추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집행기능을 부여하여 중앙정부의 보조금뿐만 아니라 자치단체간 분담금의 구속력도 있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 특정분야의 사업 추진을 위한 법인설립 등의 기능이 부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중앙의 집행기능형이나 행정단위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며, 재원조달 방법의 가능성을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 3. 공기업 투자 및 민간자본 활용방안

광역경제권 추진과 관련하여 자원조달 측면에서 정부의 공공재원 외 공기업의 자금과 민간자본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정부에서도 광역경제권 추진을 위한 부족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공기업의 자금과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 1) 공기업 자원 활용

도로, 철도 등 SOC 사업과 산업단지 등의 산업진흥 사업에는 국가공기업이든 지방공기업이든 공기업의 투자가 필요하다.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광역경제권별 선도 프로젝트는 도로, 철도, 공항·항만, 관광기반시설 등 광역기반시설의 확충이 중심이다. 이러한 광역기반시설의 확충에 재정뿐만 아니라 공기업 재원이 활용될 수 있다. 공기업 중 주로 SOC 담당 공기업들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공기업 중 SOC 유형의 공기업은 대한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인천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와 같은 산업진흥형 공기업도 지역산업 진흥을 위해 투자가 필요하다. 지방공기업으로 지하철공사, 도시개발공사 및 지역별 관련 공기업 등이 있다.

이러한 공기업들은 광역경제권 추진과 관련하여 SOC 사업, 산업진흥 사업 등에 활용되어야 한다.

#### 2) 토지은행 설립 및 적극 활용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각종 SOC 사업에 있어서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보상비 부담이 적지 않으며 지가가 상승할 경우 부담이 더욱 커진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미리 지방채 사업으로 토지를 매입해 두는 경우도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족한 재원으로, 혹은 지방채로 미리 토지를 매입하기는 용이한 일이 아니다.

SOC 투자 혹은 산업단지 조성 등에 있어서 관련 토지를 미리 매입하여 필요시 공급한다면 지가상승에 따른 재원부담의 문제를 해결 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도로 등 SOC사업은 예산제약으로 인해 순차적 사업추진이 불가피하다. 전체 계획 구간 중 남은 구간의 토지는 년차별 계획에 따라 구입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다. 이러한 경우 남은 구간의 지가상승은 보상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 SOC 조기 준공, 기업투자 활성화 등 경제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용지의 적기·적소 공급이 요구된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정부는 토지공사에 2009년부터 토지은행을 설립하여 SOC·산업용지 등 필요한 토지를 비축하고, 필요한 시기에 공급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도로, 철도, 복합터미널 등 SOC사업과 개발계획이 수립중인 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정부·지자체가 등이 매입 의뢰하게 되면, 토지은행은 해당 토지에 대해서 개발사업 영향, 지역성장 잠재력 등을 고려한 비축 적합성 조사를 실시한다. 적합성 조사결과 비축이 적합한 토지에 대해서는 비축심의위원회에서 토지 비축을 결정하고, 토지은행의 재원을 조달하여 용지매입·수용 등을 통해 비축을 하게 된다. 이렇게 비축된 토지는 향후 국가 등 수요자에게 필요한 시점에서 비축 당시의 매입원가 수준에서 공급된다.

토지은행의 도입으로 지가 급등지에 대해 용지비 부담을 줄이고 공공개발이익의 공익적 환수가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산업용지를 비축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곳에 적기·적소에 제공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저렴한 가격으로 산업용지를 공급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토지은행 설립과 관련하여 국가 SOC 사업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및 광역 SOC 사업이나 산업진흥 관련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에 있어서 토지보상비는 사업비의 많은 부분을 점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보전, 지방재 활용의 제약 등을 고려하여 지방 SOC 및 지방공단 조성 사업 등에도 적극 활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3) 민간자본 활용

도로 등 SOC 사업, 각종 시설확충 사업 등에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연구와 정책들이 그동안 많이 제시되고 시행되어 왔다. 하지만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의 제시도 중요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유인시스템이다. 민간자본의 유인은 사업 수익성, 개발절차 간소화, 인센티브, 리스크 감소 등으로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

광역경제권 개발을 위한 민간자본의 활용은 부족한 SOC 등의 투자재원을 다변화하여 적기에 개발 및 시설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동안 민간자본의 가능분야 또는 방식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다. 민자유치 등 민간자본 활용분야는 주로 SOC 등의 지역개발 사업분야로 현재의 광역경제권 추진 사업분야와 다르지 않다. 또한 민간투자방식은 민간의 수익성 제고와 리스크 관리 측면을 중요시하여 전통적으로는 BTO방식을 채택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BTL 방식을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정부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BTL 방식을 권장하고 있다.

그동안 민자유치 등 민간자본 활용 분야는 도로·철도·경전철 분야, 터미널·항만·공항 분야, 폐기물처리·하수도 처리·수도 분야, 국제회의 시설 분야, 체육시설·도시공원 분야 등이 많이 제시되어 왔다. 또한 자원개발, 산업플랜트, 지역특산물·지역산업, 도시개발 등도 제시되었으며 이러한 분야는 고수익 고위험이 따르는 분야이다. 광역경제권 추진과 관련하여 이러한 분야에 대한 민간참여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BTO 방식 또는 BTL 방식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을 혼합한 방식도 가능하다.

광역경제권 추진에 있어서 민간자본의 활용은 부족한 재원을 조달한다는 측면에서나 지역경제활성화의 측면에서나 민간경영기업의 활용 측면 등 다양한 차원에서 필요하다. 문제는 민간참여가 활성화 되도록 하는 유인시스템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관광·레저 등 수익성 사업분야는 국·내외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고수익성 사업의 경우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택단지 개발, 도심재개발 등의 도시개발사업은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할 분야이다. 그 방법으로 지역연고기업, 주민,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여 추진할 수도 있다. 한편 민간참여의 인센티브로 도시개발권을 부여할 경우 민간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기업유치뿐만 아니라 도시개발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셋째, 도로, 철도 등 SOC 건설사업, 지역개발사업이 총사업비 내에서 민간 선투자 및 민간차입공공보증제를 도입·시행할 필요가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족으로 적정한 공사기간보다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공사비가 증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민간의 선투자 및 선투자 자금조달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차입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사업을 완료하더라도 총사업비는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공사기간 단축, 예산절감 등의 효과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넷째, 각종 지역개발 관련 사업에 민간참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진입장벽인 각종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관광·레저 사업 추진, 다양한 지역개발사업에 참여를 용이하게 개별 규제뿐만 아니라 패키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패키지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다섯째, 특정부분의 민간참여에 대하여는 수익성 보장, 인센티브 차원에서 세제의 감면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기업이전과 관련하여서는 입지, 고용 고용보조금, 저렴한 임대료 인센티브 및 세제감면이 이루어지고 있다.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이전과 유사한 인센티브의 제공도 필요하다.

#### 4. 지방발전기금(가칭) 신설

광역경제권 추진과 더불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수도권 규제완화가 추진되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으로의 기업입지를 약화시키고 수도권 집중을 가중시킬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조세체계 상 지방의 공단조성 및 기업입지 등 지역경제활성화의 과실이 지방재정수입에 연결되지 못하는 점이 계속하여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의 도입의 논리가 있음에도 쉽게 시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의 기업유치 등 기업활동의 과실의 일정분을 인센티브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대안이 모색되기도 하고 있다.<sup>5)</sup>

지역발전 정책의 전환인 광역경제권의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의 일부를 다른 광역경제권의 육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를 도입할 경우,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경우에 수도권 자치단체에 세수입이 증가하고 법인세 등의 국세징수가 증가하고, 각종 부담금 등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국가정책 혹은 제도의 변화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재원의 전부 혹은 일부로 다른 광역경제권 혹은 자치단체를 위한 “지방발전기금(가칭)”을 설치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원의 지원방법은 새롭게 신설되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통하여 다른 광역경제권 혹은 자치단체에 배분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일종의 “지역발전교부금” 형태로 특정 목적사업을 대상으로 배분공식 혹은 공모에 의해 배분하는 새로운 교부금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다.

## IV. 맺음말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발전정책을 수행하는 데는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한다. 이를 재원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으로는 부족하다.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방향을 볼 때, 정부재정은 물론 공기업의 투자와 자금의 적절한 활용, 새로운 재원의 발굴 활용, 민간자본의 활용 등 동원할 수 있는 가용재원 모두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5) 정부에서는 지방의 기업유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서 징수한 법인세, 부가치세 등의 일정분을 해당지역에 배분하는 지역발전인센티브제의 시행을 고려하고 있다.

첫째, 자원조달 측면에서 중앙재원은 현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부담금 등을 활용해야 하며 신규재원을 발굴해야 한다. 일반회계의 경우 지역발전정책의 부문에 재원배분의 비중을 증가시켜야 하며, 특별회계는 재원증가 보다는 지역개발사업 수행의 회계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되도록 통합할 필요가 있다. 기금은 예산의 성격으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하여 광역경제권 지역개발 재원으로 기금의 활용을 넓혀야 하며, 새로운 기금으로 지방발전기금의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담금 또한 광역경제권 지역발전 정책에 더욱 활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귀속 부분이 많아져야 하며 중앙정부로 귀속되는 재원도 지역개발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지방재원은 자체재원이든 중앙이전재원이든 보다 확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지방재원 확충은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및 국가지원재원의 확대 내지는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이 주안점일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에 따른 규제완화 등으로 발생하는 수도권 세수입 및 부담금 수입을 지방재원화하여 지방재원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한편, 광역경제권 추진기구가 재정적 집행기능을 갖게 될 경우 자치단체간 분담금, 조세권, 기채권, 특수법인 설립, 민관공동투자 등이 선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조치도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도로, 철도 등 SOC 사업과 산업단지 등의 산업진흥 사업에는 국가공기업이든 지방공기업이든 공기업의 투자가 필요하다.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각종 SOC 사업에 있어서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보상비 부담이 적지 않으며 지가가 상승할 경우 부담이 더욱 커진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족한 재원으로, 혹은 지방채로 미리 토지를 매입하기는 용이한 일이 아니다. SOC 투자 혹은 산업단지 조성 등에 있어서 관련 토지를 미리 매입하여 필요시 공급한다면 지가상승에 따른 재원부담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토지은행 등의 설립 및 적절한 활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수행을 위한 자원조달로 정부의 재정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자본의 절적하고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의 제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유인시스템이다. 민간자본의 유인은 사업 수익성, 개발절차 간소화, 인센티브, 리스크 감소 등으로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 ☺

◀◀◀ 참고문헌 ▶▶▶

- 경기개발연구원, 「지방정부 투자자원 조달의 다각화 방안」, 1998
- 김선기, “지역경제활성화와 광역경제권개발의 바람직한 방향”, 「지방재정」,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8년 제3호.
- 김은경, 광역경제권 추진의 기본방향과 자원조달 및 배분방향, 한국지방재정학회발표논문, 2008.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상생·도약을 위한 지역발전정책 기본구상과 전략, 청와대보고자료, 2008.7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연계·특화 협력을 통한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 청와대보고자료, 2008.9
- 기획재정부, 「2008 나라살림」, 2008
- 기획재정부, 「2008년도 기금현황」, 2008
- 기획재정부, 「2007년도 부담금운영보고서」, 2008
- 기획재정부, 「중기재정운영계획(2008-2012)」, 2008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성공 그리고 나눔(제17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백서 I, II)」, 2008.3
- 부·울·경,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2007.
- 안영훈, “광역경제권의 개념, 유형 및 가버넌스 체계”, 한국지방자치학회 춘계세미나 논문, 2008.
- 오마에 겐이치(박길부 옮김), 「국가의 종말」, 한국언론자료 간행회, 1996.
- 이원섭, “광역경제권 구축방향과 과제”, 「지역경제」, 산업연구원, 2008. 3.
- 최영출, “영국의 광역과제 대응을 위한 행정시스템”, 한국지방자치학회 발표논문, 2008.
- 한국은행, 「주요국의 광역경제권 구축 사례와 시사점」, 2008.